



Global Goings-on

노르웨이

국가보건계획(2007~2010)

노르웨이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가보건계획(National Health Plan)”을 발표하였다.

“국가보건계획”은 노르웨이 의료사업의 현황 분석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국가보건계획”은 또한 노르웨이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의 축소, 그리고 환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연령, 성, 인종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보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가보건계획”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의료서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지만, 개선

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고령화 추세, 고가의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개발 등으로 노르웨이의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보건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서비스의 6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 통일성과 상호교류
- 민주주의와 합법성
- 접근성과 안정성
- 이용자의 역할 강화
- 전문성과 질적인 향상
- 일과 건강

(1) 통일성과 상호교류

의료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각 분야를 통합해 줄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노르웨이는 의료시스템 자체 내의 서비스 통일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아동복지, 직장 등 의료시스템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와의 상호교류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보건계획”은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

이 조직 내외의 상호교류와 통합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에 항상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민주주의와 합법성

“국가보건계획”은 또한 의료서비스의 개방성과 참여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자치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는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하며 일반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 자치적인 의료 및 사회서비스 제공은 대중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합법성을 얻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3) 접근성과 안정성

노르웨이는 인구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분산된 형태로 지역이 개발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의 어느 지역에 살든지 평등하게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건계획”이 강조하는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지역내의 의료시스템의 발전이 필요하다.

(4) 이용자의 역할 강화

“국가보건계획”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것은 본인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서나, 의료서비스의 계획과 발전을 위해서나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만약 환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는 환자의 보호자나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나 관계자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를 대변하는 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전문성과 질적인 향상

“국가보건계획”에 따르면 의료사업은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노르웨이의 의료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해서 정부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 중에서도 특히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애초에 줄이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6) 일과 건강

또한 “국가보건계획”은 일을 하는 것이 건강과 재활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는 직장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 위험도 크다는데서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일에 대해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받는 것과 더불어,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들의 자신감과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건강 관련된 사유로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직장과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에 기초한 안정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보건계획”의 성공적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와 환자, 의료인들에 대한 리뷰프로세스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르웨이 보건부 홈페이지

<http://www.regjeringen.no/en/ministries/hod/Whats-new/News/2007/National-Health-Plan.html?id=449316>

미 국

전아동 의료보험 추진

미국 의회민주당은 전국민 의료보험의 첫 단계로서 모든 아동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Harry Reid 원내총무는 ‘모든 아동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므로, 이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의회민주당은 모든 아동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현재의 주정부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나 메디케이드(Medicaid)에 가입되어 있는 아동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입되어 있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증가가 없다면 2012년까지 150만 명의 아동이 주정부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이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으로 앞의 프로그램들의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아동들의 가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60%의 아동이 수급자격요건이 되지만 주정부 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이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램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주정부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이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의 의료보험 제공 수단마련에 대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Families USA의 Ron Pollack은 ‘성인과는 달리 아동들은 주로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아동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은 현재 일리노이주, 메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2006년 12월 30일자
http://online.wsj.com/public/article_print/SB116743625275362869-DmA4ts29dUYgijrJDTS5fWCwd8c_20071229.html

영 국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침

장애인부 장관 Anne McGuire는 2월 6일, 공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개선을 위한 5개 중점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정부 산하 ODI(Office for Disability Issues)에 의하여 작성된

본 가이드는 장애인 인구의 3분의 1이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각종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McGuire 장관은 “양질의 정보는 공공부문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장애인을 위한 5개 중점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초기(설립)단계부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다양한 경로와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
3. 제공되는 정보가 사용자의 필요를 확실히 충족시키도록 할 것
4. 서비스에 대한 표지판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제공되는 정보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할 것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애인차별방지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비 장애인들에 비하여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크다.

공공부문을 위한 지침인 장애인 평등에 대한 의무(The Disability Equality Duty)는 영국 내 모든 공공기관에게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판단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영국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dwp.gov.uk/mediacentre/pressreleases/2007/feb/drc013-060207.asp>

건강생활 이니셔티브 발족

공공보건부 장관 Caroline Flint는 3월 15일, 가족의 건강한 생활, 특히 아동비만방지를 위한 건강생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다.

3월 14일 날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인간영양연구센터(Human Nutrition Research Centre)와 보건부에 의하여 출간된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11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 비만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을 규명해 내었다.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주요 장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아동 비만 현주소 및 관련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
- 건강한 생활습관은 너무 어렵다는 인식
- 부모들의 건강한 음식 선택을 저해하는 부담
- 건강한 생활습관을 누릴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

정부의 이번 건강생활 이니셔티브는 아동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위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좋은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진 이후에 라도, 이를 현 생활에 적용할 때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가 비만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향후 12개

월 동안 공공기관, 식품가공업체, 소매상,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 계획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출범하는 ‘Top Tips for Top Mums’는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야채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장을 웹상에 마련하는 것이다(<http://www.5aday.nhs.uk>). 이 프로그램은 주로 2세에서 11세 이하의 아동을 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처: 영국 보건부 홈페이지
<http://www.gnn.gov.uk/environment/fullDetail.asp?ReleaseID=271277&NewsAreaID=2&NavigatedFromDepartment=False>

캐 나 다

노동시장 내 전문직 이민자 통합 계획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 Monte Solberg장관은 2월 28일, 전문직 이민자 고용 지원을 위하여 약 2백 8십만 캐나다 달러(약 23억원)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캐나다의 경제발전 계획인 ‘Advantage Canada’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이민자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늘리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들을 제공하여 결국에는 캐나다의 노동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 산하의 WSI(Workplace Skills Initiative)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며, University of Ottawa 및 중소기업, 전문직 이민 근로자, 인적자원전문가와 더불어 캐나다의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장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극복하고자한다.

이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Linda Manning박사는 “이 계획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인적 자원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문화 · 다민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은 산업별 인적자원기술과 맞물려 중소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우수한 이민 인적자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주민들은 장차 경영과 리더십의 간

극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캐나다의 장래 경제성장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는 WSI는 캐나다 내의 사업장들로 하여금 장차 다가올 도전 요소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 활용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장려하고 평가하며,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고, 캐나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각 사업장에 공지한다.

출처: 캐나다 사회개발부 홈페이지

<http://news.gc.ca/cfmx/view/en/index.jsp?articleid=279599&> 